『성북구청 · 주식회사 담채원』

김치공급을 위한 기관과 기업의 협약서(안)

성북구청(이하 “기관”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담채원(이하 “기업” 이라 한다.)은 기관과 기업 협력의 일환으로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교 식재료 개선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기관과 기업이 학교 식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협력 관계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범위】 기업이 학교에 김치 납품과 친환경 식재료 공급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간의 관심과 사회적 책임으로 폭넓은 협력을 유지하는데 동의하며, 본 협약에 의한 각종 사업은 상호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협력분야】 기관과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김치 식재료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상호 노력한다.

1. 성북구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
2.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 개선에 대한 공동노력
3. 생산시설의 견학 장소 활용 및 친환경 생산단지 현장학습 지원
4. 식재료 개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참여
5. 식재료 안전성에 관한 주기적인 검사 지원
6. 식재료의 수급 관련 물가동향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
7. 기타 기관과 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제4조【상호협의】 기관과 기업은 학교 급식공급 등을 위한 협력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아래 각종 제도 및 규정을 존중하며, 협력 사업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한다.

제5조【실무회의】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내용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관에서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 유치원 등과 기업 간의 계약 및 공급에 관한 제반 사항
2. 제3조의 각 호 협력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

제6조【기밀유지】 기관 및 기업은 상호교류를 통해 인지한 제반사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제품의 하자】 만일 하자가 있는 제품이 공급된 경우 즉시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품의 하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서의 효력】

1. 본 협약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으로 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그 효력을 1년 연장한다.

제9조【협약서의 변경】 본 협약서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사안이 발생할 시 기관과 기업이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서의 해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2. 기업의 사정상 지속적으로 제품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관에서의 요구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4. 식품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5.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11조【기　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쌍방(기관・기업 대표자)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본 협약은 기관과 기업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5년 6월 19일

성 북 구 청	**성북교육지원청**	**주식회사 담 채 원**
교육청소년과장 최 병 재	**평생교육건강과장 정 길 중**	**대　표　김 대 곤**
_____	_____	_____